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80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서삼석·강득구·김종민

정을호 · 소병훈 · 김동아

윤준병 • 이병진 • 박희승

전재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해상교통 관리를 과학화·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 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였음에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 업으로서 산업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국제시장에서 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의 확대·발전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 제공 및 활용 주체가 다양화되는 등 현실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

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에 국가기관 등을 추가와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해상교통정보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교통정보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다음 각 호

- 의 산업(이하 "해상교통정보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할 수 있다.
- 1. 해상무선통신망 구축 관련 산업
- 2. 해상교통정보 수집・분석・가공・판매 산업
-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기·장비 등의 제조·유지· 보수 산업
-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1. 해상교통정보의 가공 수집 활용 등의 고도화 지원
- 2. 해상교통정보산업 관련 품질보장사업 및 보급 · 전환사업의 운영
- 3. 해상교통정보산업에 필요한 교육 · 인력양성
- 4. 해상교통정보산업의 표준화 및 수출지원
- 5. 해상교통정보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
- 6. 그 밖에 해상교통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제1항 본문 중 "해상교통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자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 상교통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3. 해상교통정보의 수집 · 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 4.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단말기 설치 선박에 대한 면제 등) 제18조제1항에 따라 단 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 다.
 -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
 - 2.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기준

제28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 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 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 -----「지능정보화 기 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 본법」 제2조제1호----보를 말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가. ~ 마. (생 략)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 스"란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 학화 · 고도화하기 위하여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 양수산부장관 또는 인력ㆍ시 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 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 다. 무선통신망 등-----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 무선통신망 이용) ① (현행 제 무선통신망 이용) (생 략)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해상교통정보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 비스의 효과적인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상교통정보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산업 (이하 "해상교통정보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할 수 있다.

- 1. 해상무선통신망 구축 관련 산업
- 2. 해상교통정보 수집·분석· 가공·판매 산업
-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관련 기기・장비 등의 제조・유지・보수 산업
-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

제17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제17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 • 저장 • 검색 • 분석 • 가공 된 해상교통정보를 해상교통정

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활성 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산업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 하여 추진할 수 있다.
- 1. 해상교통정보의 가공・수집 • 활용 등의 고도화 지원
- 2. 해상교통정보산업 관련 품질 보장사업 및 보급 · 전환사업 의 운영
- 3. 해상교통정보산업에 필요한 교육 · <u>인력양성</u>
- 4. 해상교통정보산업의 표준화 및 수출지원
- 5. 해상교통정보산업에 대한 금 융 및 세제상의 지원
- 6. 그 밖에 해상교통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 -----다음 각 호

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해 상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자 등 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

<u><신</u>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신 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 자</u>
·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중 해상교통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3. 해상교통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 는 자
- 4.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정보를 활

 용하는 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의2(단말기 설치 선박에 대한 면제 등) 제18조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

	의 기준 요건 중 일부를 완화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
	른 선박시설기준
	2.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
	선설비기준
제28조(업무의 위탁) <신 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
	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u>수 있다.</u>
<u>(생 략)</u>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흥)